

## 요 약 전

□ 제목 : 대한전기협회-승실사이버대학교 위탁교육협약

□ 위탁생 자격

- 신입학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협회 및 협회 회원사 임직원
- 편입학 : 당해 학년 편입학에 필요한 수료 인정학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협회 및 협회 회원사 임직원

□ 학비감면혜택

- KCU는 협회에서 입학한 자에게 다음과 같은 학비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 협회 및 협회 회원사 임직원 : 매 학기 수업료 30% 감면(전학과)  
(재직증명서 및 협회 회원 확인서(또는 추천서) 제출 시)
- 수업료에 대한 KCU의 감면혜택은 신입 142학점, 2학년 편입 105학점, 3학년 편입 72학점(신청학점 기준)까지로 제한.  
※ 추가 학점 수강 시 본인 부담

# 대한전기협회 - 송실사이버대학교 위탁교육 협정서(정원내)

대한전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송실사이버대학교(이하 'KCU'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위탁교육협정을 체결한다.

## 제1조 (목적)

본 협정은 협회 및 협회 회원사 임직원이 KCU에 위탁교육(신·편입학)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 (적용 범위 및 기간)

본 협정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협정기간은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협정 만료 전 일방 당사자의 별도 서면에 의한 재협정 포기 내지 해지 통지가 없는 한 매 1년마다 협정을 자동 연장한다. 단, 연장 시에는 직전년도 위탁교육실적 등을 감안하여 학비 감면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 (위탁생 자격 및 지원절차)

### 1. 위탁생 자격

- ① 신입학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협회 및 협회 회원사 임직원
- ② 편입학 : 당해 학년 편입학에 필요한 수료 인정학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협회 및 협회 회원사 임직원

### 2. 지원절차 : KCU의 학칙과 입학전형절차를 준수한다.

## 제4조 (학비감면혜택)

### 1. KCU는 협회에서 입학한 자에게 다음과 같은 학비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 ① 협회 및 협회 회원사 임직원 : 매 학기 수업료 30% 감면  
- 재직증명서 및 협회 회원 확인서(또는 추천서) 제출 시

2. 수업료는 KCU의 학칙에 의거하여 입학금을 제외한 학점당 등록금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KCU는 추천자의 교육비 책정 시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책정한다.

3. 수업료에 대한 KCU의 감면혜택은 신입 142학점, 2학년 편입 105학점, 3학년 편입 72학점(신청학점 기준)까지로 제한하며, 추가 학점 수강 시에는 산·편입학 대상자 본인이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 제5조 (선발과 입학)

1. 산·편입 위탁교육 대상자는 KCU에서 정한 입학전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하고 평가 기준과 절차는 KCU의 규정에 의한다.
2. 산·편입 위탁교육 대상자가 모집정원을 초과할 경우 KCU의 입학전형평가 성적에 의하여 합격자를 선정한다.

### 제6조 (위탁교육 대상자의 신분)

본 협정에 의거 입학이 허가된 산·편입 위탁교육 대상자는 KCU의 학생신분을 갖게 되며, KCU 학칙을 적용받는다.

### 제7조 (비밀준수의무)

KCU와 협회는 본 협정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거나 또는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 및 비밀을 보장하며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본 조항의 의무는 본 협정 기간 중은 물론 본 협정 종료 후에도 계속 유지한다.

### 제8조 (양도금지 등)

당사자들은 본 협정 기간 동안 협정 이행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일방 당사자가 본 협정에 따라 보유하게 될 권리, 의무, 지위를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위임, 대행, 대리케 하거나 증여, 상속, 기타 처분 할 수 없으며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 제9조 (협정의 해제 및 해지)

1. 당사자들은 본 협정을 수행할 법률적, 행정적, 기술적, 재산상 등의 능력 및 자격이 없다고 확인된 경우 일방 당사자가 사전 서면 통지로서 본 협정을 해제, 해지 할 수 있다. 이 때 해제 또는 해지일자는 서면 도달일자로 본다.
2. 당사자들은 언제라도 90일 전 서면 통지로서 본 협정을 해지할 수 있다.

### 제10조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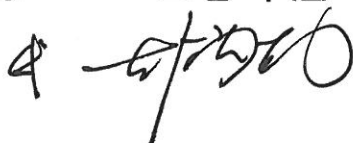
1. 본 협정서는 신의성실 원칙에 의하여 이행하며, 위탁교육 대상자의 교육조건에 대해 협정서에서 정하지 않는 내용은 당사자간의 성실한 협의과정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2. 본 협정서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고, 양 대표자의 직인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6. 7. 28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13

대한전기협회 회장

조 환 익 (인)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30길 23

숭실사이버대학교 총장 한 헌 수 (인)

